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김해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내용

유 형	인원 (명)	업무내용	근무지	인건비 (천원)	근무기간	비 고
일반형 (전일제)	34	(복지)행정 업무지원, 우편분류, 교육업무 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기관) 등	2,011	1~11월 (주5일, 주40시간)	4대보험 포함
				1,886	12월 (주5일, 주37.5시간)	" (변동가능)
일반형 (시간제)	18	(복지)행정 업무지원, 직업재활시설 지원요원, 교육업무 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직업재활시설 (기관) 등	1,005	1~11월 (주5일, 20시간)	"
				952	12월 (주5일, 주19시간)	" (변동가능)
복지일 자리 (참여형)	63	사무 보조, 환경정비,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계도·단속, 급식지원, 우편분류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관), 김해시내 (장애인 주차구역) 등	539	12개월 (월56시간)	산재·고용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근무기간 : 2023. 1. 2. ~ 12. 31. (12개월)

3. 모집기간 : 2022.11.07.(월) ~ 11.16(수) 09:00~18:00(토·일 제외)

4.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3년 신청자의 경우, '22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시간제와 복지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장애인일자리 근무시간과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아래의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연속참여자에 대해 선발 득점 총점의 5%이상 감점)
-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4. 제출서류

<<필수서류>>

-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 배치기관 및 직무 기재 필수(붙임 참고)
-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증빙서류																											
①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및 ITQ자격증 - 사회복지사 및 장애인 재활상담사 자격증																											
③여성가장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첨 부 서 류</th> </tr> </thead> <tbody> <tr> <td>공통사항</td> <td colspan="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td> </tr> <tr> <td rowspan="9">선택사항</td> <td>부모 부양시</td> <td>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td> </tr> <tr> <td>가출·행방불명</td> <td>실종신고서</td> </tr> <tr> <td>장애</td> <td>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td> </tr> <tr> <td>질병으로 요양 중</td> <td>의사의 진단서</td> </tr> <tr> <td>군복무</td> <td>복무확인서</td> </tr> <tr> <td>학교 재학</td> <td>재학증명서</td> </tr> <tr> <td>교도소 입소</td> <td>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td> </tr> <tr> <td>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td> <td>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td> </tr> <tr> <td>이혼소송 제기</td> <td>이혼소송확인서</td> </tr> <tr> <td>기타 가족 생계 부양</td> <td>통·반장의 확인서</td> </tr> </tbody> </table>	구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구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④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⑤장애인일자리 사업 우수참여자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20~22년) 이내 사용가능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 정의

- ① 미혼여성이거나,
 -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6. 접수방법 : 방문접수

7. 접수처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상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8.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가 참여제한 기간(1년)이 경과하여 재참여하고자 할 경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 →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 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자필로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55-722-4660) 또는 이메일 (kbr0159@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결과발표일로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관리될 예정입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김해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김해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지원팀(TEL. 330-3306) 및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일

김 해 시 장

※ 붙임

2023년 장애인일자리 근무지

유형	배치기관	직무내용	주소	인원 (명)
합 계				115
전일제 (34명)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 사무보조	읍면동행정복지센터(19개소)	23
	김해시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복지행정 업무지원	대청로 176번길 30	1
	김해시장장애인종합 복지관	장애인이동보장구 수리지원사업 전담	삼계로 140	1
	지혜유치원	유치원 등·하원 업무보조	금관대로 1297번길 24	1
	김해시장장애인부모회	복지행정 업무보조	평전로 19	2
	김해시종합사회 복지관	행정업무 보조	분성로 227	4
	김해관동우체국	우편분류	계동로 23	1
	경남지체장애인연 합회 김해시지회	장애인일자리사업 전담지원	인제로 258	1
시간제 (18명)	김해시청	복지·행정 사무보조	김해대로 2401 노인장애인과	1
	장유3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 사무보조	관동로 25	1
	장유2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 사무보조	능동로 43	1
	진영장애인자립 생활센터	행정 및 복지서비스 보조	진영로 234번길 12, 정원빌 1층	2
	도란	작업(생산)활동 직무	인제로 258 (삼방동) 장애인복지관 1층	2
	(사)충효예 실천 김해본부	업무 보조	호계로 422번길 24, 3층	1
	김해서부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무보조	장유로186 엠펙이어빌딩3F	1
	김해시종합사회복 지관	업무 보조 및 환경 정비	분성로 227	2
	세아	직업재활시설 지원요원	진례면 진례로 58-2	1
	김해동광초 병설유치원	교육업무 지원	호계로500번길 15-15	1
	함께하는 일터	직업재활시설 지원요원	한림면 한림로 208	2
	(사)경남신체장애 인김해시지부	사무보조	인제로 258(삼방동)	1
	경남농아인협회 김해시지회	사무보조	인제로 258(삼방동)	1
	김해시장장애인 편의증진기술센터	사무보조	인제로 258 (삼방동)	1

복지 일자리 (63명)	진영읍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및 계도	진영읍 여래로20번길 11	2
	주촌면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및 계도	주촌면 서부로 1628번길 12	2
	내외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및 계도	내외로 67(내동)	2
	북부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및 계도	해반천로 160(북부동)	2
	장유1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업무 지원	금관대로 579	2
	장유2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및 계도	능동로 43(삼문동)	2
	장유3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및 계도	내외로 67 (내동)	2
	김해시장장애인종합 복지관	주차지도, 장애인목욕탕 안전요원	김해시 삼계로 140	10
	김해YWCA	환경정비	해반천로168번길 10-16	1
	김해시장장애인부모 회	환경정비	평전로 19 4층	2
	사)느티나무경상 남도장애인부모회 김해시지부	사무보조,환경정비, 다양한 업무보조	구지로 26. 성보빌딩 401호	3
	김해서부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업무보조/환경정비	장유로186 엠패이어빌딩3F	4
	사) 김해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무보조	내외중앙로 75 내외빌딩 404호	2
	김해시장장애인 골프협회	김해시장장애인파크골프장 구장관리	이동 48-3 김해시장장애인파크골프장	5
	김해시우체국 우편물류과	우편분류	계동로 23(관동동)	5
	김해진영우체국	우편분류	진영읍 여래로20번길 21	2
	שלג인사회적협동 조합	환경정리	삼문로 62,1층	3
	김해시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환경정리	해반천로 130번길 19	2
	김해시장장애인단체 연합회	환경정리	인제로 258	4
	(사)신장유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환경정리	대청로 210번길 20, 305호	4
경남농아인협회 김해시지회	환경정리	인제로 258	1	
보듬	사무보조	우암로 43번길 4-11	1	